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내용 및 평가

한은영\*

## 1. 개요

ICT의 약진에 의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기업은 그 활용을 주저하여 왔고 시민들은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ICT 발달을 배경으로 기업이나 지자체의 빅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이 법안은 '15년 9월 3일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하는 '익명가공정보화'를 의무화하고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도모하면서도 그 이용과 활용을 촉진하여 신산업·신서비스의 창출과 국가안전·안심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평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분석실 부연구위원, (043)531-4236, hey@kisdi.re.kr

## 2. 주요 경과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의 이용가치가 점차 높아지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활용이 이루어지는 등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회적 상황이 현행법 제정 당시와는 다르게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2003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올 해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과 관련된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3년 5월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제정 및 공포
- 2005년 4월 1일 전면시행
- 2013년 12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제도의 재검토 방침 결정
- 2014년 6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초안 공포
- 2015년 3월 10일 제189회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 2015년 8월 2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 2015년 9월 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

## 3. 주요 개정 내용<sup>1)</sup>

### (1)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명확화

#### ○ 개인정보의 정의 명확화

이번 개정에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개인식별부호)가 담긴 것을 개인정보로 명확히 하였다. 개인식별부호는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 i) 특정 개인의 신체 일부 특징을 전자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변환한 글자, 숫자, 기호, 기타의 부호
- ii) 서비스 이용/제품구입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할당되거나 개인에게 발급되는 카드/기타 서류에 기재되거나 전자적 방식에 의해 기록되는 글자, 숫자, 기호, 기타 부호가 그 이용자(구입자)마다 다르도록 할당/기재/기록됨으로써 특정 이용자(구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것

1) 内閣官房 IT総合戦略室(2015)과 北野晴人(2015)을 주로 참조.

여기서 첫 번째 항목은 생체 인식 등에 사용되는 지문이나 홍채, 정맥 등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디지털화된 정보를 나타내며, 두 번째 항목의 경우 포인트 카드 회원번호나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 ID 등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휴대폰 번호와 기기에 할당된 단말ID 등의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가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세부 사항을 정령(政令)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정은 향후 정령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 ○ 배려가 필요한 개인정보(민감정보)에 관한 규정 정비

본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또는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인종, 신앙, 사회적 신분, 병력, 범죄 경력, 범죄 피해 사실 등 ‘배려가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는 본인 동의를 얻어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무화하고 본인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의 특례(opt-out)를 금지한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민감정보(sensitive data)’로 정하고 그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 (2) 적절한 규율 하에 개인정보 등의 유용성 확보

#### ○ 익명가공정보에 관한 가공방법 및 취급 등의 규정 정비

빅데이터 분석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진흥에 도움이 되게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도 보호할 목적으로 ‘익명가공정보’ 조항이 신설되었다. 익명가공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정의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 i) 해당 개인정보에 포함된 기술(記述) 등의 일부를 제거한 것
- ii) 해당 개인정보에 포함된 개인 식별 부호의 전부를 제거한 것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익명가공정보 취급사업자’라고 여겨지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를 가공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i)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유출방지 등의 이른바 정보보안 대책)를 행할 것
- ii) 해당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공표할 것
- iii)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그 제공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제3자에게는 제공정보가 익명가공정보임을 명시할 것
- iv) 해당 익명가공정보를 다른 정보와 조합(照合)하거나 가공방법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식별을 행하여서는 안됨

이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가공정보화 하면 본인의 동의 없이도 외부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 단 어디까지 정보를 가공하면 ‘익명’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작성 및 신고, 공표 등의 규정 정비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認定個人情報保護団体)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만들 때 소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그림 1) 개정 법률에 따른 익명가공정보 제공의 도식화



자료: 内閣官房作成法律案骨子案資料, 情報法制研究会 第2回シンポジウム(2015)에서 재인용.

### (3) 개인정보보호 강화

#### ○ 추적성 확보(제3자 제공에 관한 확인 및 기록 작성 의무화)

이번 개정에서는 익명가공정보 취급 이외에도 제3자 제공에 대한 규정이 늘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날짜, 제3자의 성명 또는 명칭,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동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한다.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에 따라 공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법인일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해당 개인정보의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짜, 확인된 해당사항 등을 기록해야한다. 이것은 불법으로 반출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유통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 부정한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제공 죄 신설

이번 법률에서 부정한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 죄가 신설된 것도 큰 개정 사항 중 하나다. 개인정보 취급사업자 또는 그 종업원(과거 종업원이었던 자 포함)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을 본인이나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설 및 그 권한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현행 주무 장관의 권한 일원화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설이며, 이 위원회는 번호법<sup>2)</sup>의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편하여 내각부의 외국(外局)으

2) 행정절차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27호).

로 신설되게 된다. 위원회는 출입 조사권을 포함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고, 현재 각 산업 분야별로 주무 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감독 업무를 일원화하여 집약해 담당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이번 개정에 의해 신설되는 각종 제도 등의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유럽에서는 EU 데이터보호지침에 의해 국가 정보보호기구에 이러한 강력한 권한을 주고 있는데, 이들과의 국제적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지만 현재 약 50명인 사무국의 체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많은 나라의 독립기구가 민관 모두를 감시하지만, 위원회는 내 번호 제도에 관한 영역을 제외한 “공적 부문”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sup>3)</sup>

## (5) 개인정보 취급의 세계화

### ○ 국경을 초월한 적용과 외국 집행 당국에의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 정비

일본 국내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외국의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집행 기관에 그 직무 수행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 외국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규정 정비

‘외국의 제3자에 대한 제공의 제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본인에게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인 동의 없이 외국에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일본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다고 인정된 국가에 있는 경우</li> <li>ii) 일본의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
|--|

국외와 역외에 개인정보 반출을 금지하는 법률로는 EU의 데이터보호지침이 유명하지만, 최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의 법률도 개인정보의 국외 반출을

3) 毎日新聞(2015).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규제는 여러 나라로 퍼져 나갈 것이다.<sup>4)</sup> 일본의 법제도 이들과 정합성을 가지는 형태로 개정되었다.

## (6) 기타 개정 사항

### ○ 본인 동의 없는 제3자 제공(opt-out 규정)의 신고, 공표 등 엄격화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opt-out 규정)을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표한다.

### ○ 이용 목적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 정비

개인 정보를 취득했을 때의 이용목적에서 새로운 이용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한다.

### ○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5천 명 이하인 소규모 취급사업자에 대한 대응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5,000명 이하의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의익의 침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000명 이하를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 4. 결어: 향후 일정 및 평가

2016년 1월에 개인정보 악용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제3의 독립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는 각 부처별 감독과 민간자율 규제에 맡겨져 왔으나, 강력한 권한을 갖는 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독립기구에 의한 감독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합류하게 되었다. 개정 법률은 공포로부터 2년 내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 시행 전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도하여 이번 법률에서 정한 것 외의,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령으로 제정하게 된다.

4) 北野晴人(2015).

[그림 2]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계획(안)

|      | 2015년                               | 2016년<br>상반기    | 2016년<br>하반기    | 2017년<br>상반기    |                                |
|------|-------------------------------------|-----------------|-----------------|-----------------|--------------------------------|
| 국회   | 위원회 동의인사<br>(同意人事)                  | 개인정보보호위원회<br>신설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제정)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제정) |                                |
| 시행준비 | 내각관방<br>정경안의 검토 등<br>주지 홍보          |                 |                 |                 | 위원회 규칙·가이드라인<br>등의 책정<br>주지 홍보 |
| 법집행  | 소비자청 주무장관<br>현행법의 소관<br>현행법에 근거한 감독 |                 |                 |                 | 개정법의 소관<br>개정법에 근거한 감독         |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공포일(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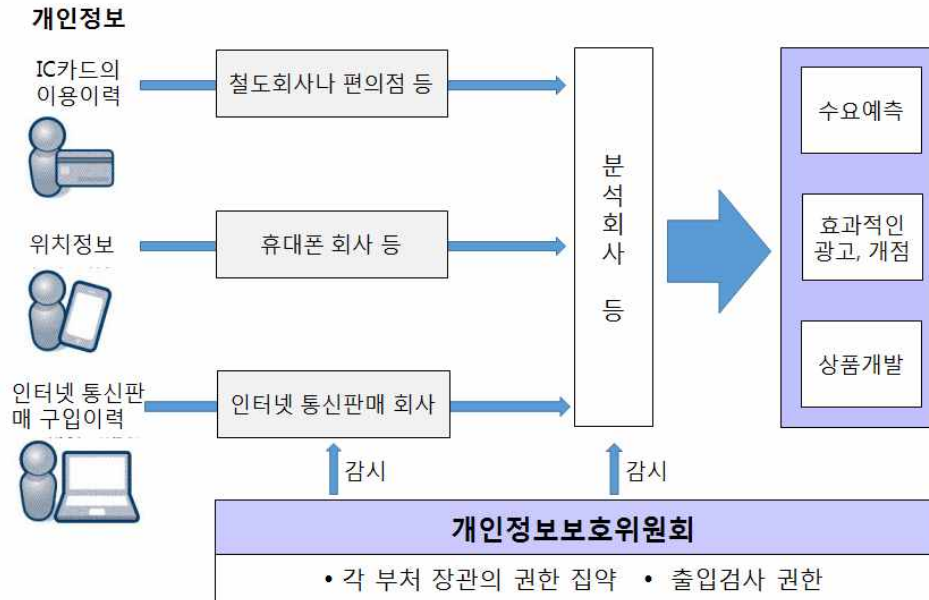
자료: 内閣官房 IT総合戦略室(2015).

이번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도모하는 법제도가 마련됨으로써 구매 내역 등을 포함한 빅데이터의 경제적 활용이 용이해지고 이를 통한 기업의 비즈니스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 등은 구매 데이터를 익명화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각 기지국에 있는 사람의 연령, 성별, 위치 정보 등의 데이터를 익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체는 이러한 정보를 상품 개발에 참고하고 소매유통업체는 판매 계획 및 상권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력 사용량과 교통정보 등도 비즈니스와의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시민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기업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쉬워지게 된다. 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에 국제적 신용을 크게 향상시켜 EU 등과



의 비즈니스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sup>5)</sup>

[그림 3] 익명화한 개인정보의 이용 예시



자료: 日本經濟新聞(2015).

그러나 법률은 개정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가 모호한 상태이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우선, 어디까지 정보를 가공처리하면 ‘익명’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다. 내각관방 IT종합전략실의 설명에 의하면, 이름, 여권번호, 면허번호가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주소 및 생년월일, 구입처, 제품,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익명처리의 대상이지만 어디까지 익명가공처리할지는 사례별로 판단하게 되어 있다.<sup>6)</sup>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용도를 본인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

5) 朝日新聞(2015b).

6) 朝日新聞(2015b).

지인이 확실치 않다.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될지에 관해 민감하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폭이 확대되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엉뚱한 데서 사용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어떤 범위까지 활용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또한, 익명화 기술에 대한 신뢰 문제가 존재한다. 정부는 국회심의회에서 “기술적으로 100% 복원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대답했다.<sup>7)</sup> 따라서 익명화되었기에 해당 정보로부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익명가공처리 방법에 따라서는 제3자에게 넘어간 후에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한다.

한편,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고 일반 대중에 공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정보의 활용을 주저할 수도 있다<sup>8)</sup>는 전망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관련 규칙 마련에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촉진이라는 두 가지 법 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는 규칙이 상당 부분 좌우할 것이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각 사례를 판단하고, 신앙과 병력 등 ‘배려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결정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익명가공정보의 수준을 정하는 등 중요한 임무를 맡기 때문에 향후 위원회의 활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內閣官房 IT総合戦略室 (2015). 概要 (個人情報保護法改正部分), 2015. 4.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55092.pdf](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55092.pdf)
- 北野晴人 (2015). 個人情報保護法は何を改正するのか, ZD Net Japan, 2015. 6. 29.

7) 朝日新聞(2015a).

8) 朝日新聞(2015b).

(<http://japan.zdnet.com/article/35066449/>).

毎日新聞 (2015). 改正個人情報保護法：成立「匿名」加工で売買自由, 2015. 9. 4.

日本経済新聞 (2015). 販売・開発に個人情報活用, 2015. 8. 28.

情報法制研究会 第2回シンポジウム(2015). 改正個人情報保護法の国会審議分析, 2015. 6. 28. ([http://www.dekyo.or.jp/kenkyukai/data/2nd/20150628\\_doc1.pdf](http://www.dekyo.or.jp/kenkyukai/data/2nd/20150628_doc1.pdf))

朝日新聞 (2015a). 個人情報の扱いはどう変わる改正マイナンバー法・改正個人情報保護法, 2015. 9. 4.

\_\_\_\_\_ (2015b). 私の情報、特定されない? 改正個人情報保護法が成立, 2015. 9. 4.